



모방제품 개발방법의 보호여부 및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

13

01 서지 사항

국가 법원	일본 도쿄지방법원	사건번호	평정12년(와) 제26971호
판결 일자	2001. 8. 31.	판결 결과	원고 패소
원고	이스턴 리얼 에스테이트 주식회사		
피고	진 브라더스 주식회사		
참조 법령	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3호, 2조 1항 7호		
영업 비밀	제품개발방법 및 소매점에서 원고 제품의 판매가격에 대한 매입가격의 비율		
키워드 (Keyword)	모방, 영업비밀		

02 사건 개요

원고는 핸드백 등 가죽 제품의 수입 판매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. 1997년 10월부터, 프랑스 에르메스사가 제조하는 가방의 형태와 흡사한 가방을 「에포닌」의 상표를 붙여 판매했다.

피고는 가방 제조 및 도매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. 2000년 7월 무렵, 마찬가지로 에르메스사의 제조하는 가방의 형태와 흡사한 가방을 「로얄 그레이스」의 상표를 붙여 판매했다.

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가방의 형태를 모방한 가방을 제조 판매했던 것 및 제품개발방법이나 소매점에서 원고 제품의 판매 가격에 대한 매입 가격의 비율(이하 「도매율」이라 함)과 같은 원고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이유로,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이다.

03 주요 쟁점

원 고



피 고

피고는 원고의 가방형태를 모방했다.

원고도 에르메스사 제품의 형태를 모방했다.

원고 제품은 에르메스사의 고객과는 다른 고객층을 대상으로, 독자적인 시장을 개척한 것이므로 원고 제품의 형태는 그 시장에 있어서 독자성이 있다

원고 독자의 디자인 등 창의적인 연구는 전혀 존재하지 않아, 원고는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 없다

피고는 원고의 제품개발방법 및 도매율에 대한 정보를 부정취득했다.

원고의 제품개발방법은 원고독자의 것이 아니며, 도매율은 소매점으로 쉽게 입수할 수 있는 것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.

04 판결 요지

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3호 소정의 부정 경쟁 행위에 대해 법4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, 스스로 비용과 노력을 투하하여 해당 제품을 개발해서 시장에 놓은 자에 한정된다.

원고 제품의 형태는 저명한 에르메스사의 버킨의 형태를 모방한 것이고, 원고는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투하하여 제품을 개발해서 시장에 놓은 자라고는 할 수 없다. 그렇다면, 원고는 법4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. 따라서 피고가 원고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것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.

원고가 이야기 하는 제품개발방법 및 도매율은 그 특성상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정보라고 할 수 없는 것, 이런 방법이 비밀로서 관리되어 있던 흔적은 엿볼 수 없는 것, 유용한 정보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것 등의 이유에 비추어 보면, 법2조 4항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.

05 Key Point

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3호가 만들어진 취지는, 비용과 노력을 투하하여 제품을 개발해서 시장에 놓은 자가, 비용과 노력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기간(처음 판매된 날로부터 3년), 투하한 비용의 회수를 용이하게 하고, 제품화에 대한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, 비용과 노력을 투하하지 않고 제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.

따라서 법 2조 1항 3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법 4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, 스스로 비용과 노력을 투하하여 해당 제품을 개발해서 시장에 놓은 자에 한정된다.
